

요트보험 Yacht Insurance

CHUBB®



Yacht Insurance 인수정책

- 선급유무없이 선령 15년 이하의 요트 및 이와 유사한 선박(보트 등)에 발생한 물적 손해 및 제3자 배상책임, 잔존물제거비용 담보(보험가입금액 한도)
- Institute Yacht Clauses 1/1/85 (협회요트 약관)사용

주요 담보위험

- 해상, 강, 호수 또는 항행가능한 수면에서의 고유 위험
- 화재
- 투하
- 해적행위
- 항공기 또는 이와 유사한 물체, 또는 그로부터 추락하는 물체, 육상운송용구, 도크 또는 항만시설이나 장비와의 접촉
- 지진, 화산의 분화 또는 낙뢰
- 좌초 후 합리적인 선저 검사비용
- 피보험자, 선박소유자, 선박관리자의 상당한 주의의 결여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는 한, 기타 발생 가능한 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을 담보(단, 예외조항 있음)

주요 면책위험

- 선외 모터의 유실
- 최대 고안속도가 17노트를 초과하는 구명선 (단, 예외조항 있음),
- 모선의 선박명이 영구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 구명선, 선박이 좌초되거나 타 선박과 충돌하거나 또는 물 이외의 다른 물체와 (얼음 포함)의 접촉으로 인하여 돛대가 손상을 입은 결과로 돛이 휘어진 것이 아닌 한 세워져 있을 동안에 바람에 의해서 찢어지거나 날아가 버린 돛이나 보호 덮개
- 선박의 좌초, 침몰, 화재, 다른 선박과의 충돌 혹은 물 이외의 다른 물체(얼음 포함)과의 접촉에 기인된 멸실이나 손상이 아닌 한 경주 중에 발생한 돛, 돛대, 지목 및 휴지상태나 사용 중에 있는 색구 등의 멸실 또는 손상
- 개인소지품, 소모품, 낚시장비 또는 계선장치, 모터 및 축전지를 사용하는 전기기계와 이의 부속품(축 및 프로펠러는 제외, 예외 조항 있음)
- 설계의 하자를 제거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 전쟁위험(제21조) / 동맹파워위험(제22조)-별도의 전쟁보험에서 담보
- 원자핵위험(제23조)

처브그룹 소개

처브그룹은 세계 보험업계를 선도하는 보험사입니다. 전 세계 54개국에서 재물보험, 특종보험, 개인상해보험, 건강보험, 재보험 및 생명보험을 다양한 기업 및 개인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더라이팅 중심 기업인 처브그룹은 보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원칙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평가 및 관리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처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보험 전문지식과 장인정신으로 처브그룹은 개인, 가족, 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 다양한 고객층에게 최상의 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처브그룹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광범위한 판매 채널, 탁월한 재무 건전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자랑합니다. 처브그룹은 다국적 기업 및 중소기업 고객을 위한 재물보험, 특종 보험, 리스크 관리 서비스, 고객자산보유 고객을 위한 자산보호 목적의 보장성보험, 개인 고객을 위한 생명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주택종합보험 및 특화보험 그리고 단체상해보험, 단체생명보험 및 재보험 상품을 제공합니다.

미화 1,957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미화 468억 달러의 총 수입 보험료를 달성한 처브그룹의 주요 보험 계열사들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사의 기업재무 능력 AA 등급을, AM Best의 A++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브그룹의 모기업인 처브리미티드(Chubb Limited)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CB)에 상장되어 있으며, S&P 500 지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브그룹은 취리히, 뉴욕, 런던, 파리 및 기타 주요 도시에 사업본부가 있으며, 전 세계 약 34,000명 이상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Contact Us

라이나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처브그룹 컴퍼니
03156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 15층
대표번호: +82 2 2127 2400
대표팩스: +82 2 6913 8498
www.chubb.com/kr

라이나손해보험은 처브그룹 컴퍼니인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의 브랜드명으로,
라이나생명과 독립된 계열회사입니다.

김진복 차장
Marine Senior Underwriter
O +82 2 2127 2352
E Jinbok.Kim@Chubb.com

양준호 대리
Marine Underwriter
O +82 2 6711 5786
E Jun-Ho.Yang@Chubb.com

Chubb. Insured.SM

알아두실 사항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와 의무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계약후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의 사항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시]

1.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2.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예 :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등)

회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 청약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내용(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 소비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자는 청약서 약관과 청약서 부분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취소 신청주소: (0315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 15층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전화: 02-2127-2400)
- 가까운 영업점위치: (0315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 15층

(고객서비스센터)에 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전화: 02-2127-2400)

보험금 지급사유와 통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의 지급 및 지급제한

보험금의 지급

보험자는 지급보험금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손해를 통지 받고 보상할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상황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자액을 가 지급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책임이 확정되지 않거나 피보험자의 관리영역 내에 있는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은 보험금 지급을 중지합니다.

A. 보험자에게 필요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보험자의 보상 청구권에 의문이 있는 경우

B.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의 조사 또는 형법에 의한 심문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 중인 경우

보험금의 지급 제한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일반 면책 사항(이 일반 면책은 증권면의 전 부분에 적용됩니다.)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적 행위나 고의적 태만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해지환급금 안내)

계약의 해지사항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3.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계약후 알릴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계약의 해제사항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650조 제1항).

보험계약이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리나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이유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 보험기간 중 남은 미경과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돌려드리므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회사 전화번호: 1566-5800(고객서비스센터)

인터넷 주소: www.chubb.com/kr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www.fsc.or.kr/국민없이332/)
우)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 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 의무) 제4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제4항 또는 제21조(부당 권유 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제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 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Chubb. Insured.SM